

부속서 11-가
정부조달 양허표

제1절
중앙정부기관

한국 양허표

기준가

제11장(정부조달)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에 적용된다.

130,000 SDR	모든 상품
130,000 SDR	모든 서비스
5,000,000 SDR	모든 건설서비스

기관 목록

1. 감사원
2. 국무조정실
3. 국무총리실
4. 기획재정부
5. 교육부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외교부
8. 통일부
9. 법무부
10. 국방부
11. 행정안전부[협정 제11.4조(예외)에 규정된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는 제외한다]
12. 문화체육관광부

13. 농림축산식품부
14. 산업통상자원부
15. 보건복지부
16. 환경부
17. 고용노동부
18. 여성가족부
19. 국토교통부
20. 해양수산부
21. 중소벤처기업부
22. 공정거래위원회
23. 금융감독원
24. 국민권익위원회
25. 방송통신위원회
26. 국가인권위원회
27. 인사혁신처
28. 법제처
29. 국가보훈부
30. 식품의약품안전처
31. 국세청
32. 관세청
33. 조달청
34. 통계청
35. 검찰청
36. 병무청
37. 방위사업청
38. 경찰청[협정 제11.4조(예외)에 규정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는 제외한다]
39. 문화재청
40. 농촌진흥청
41. 산림청
42. 특허청
43. 기상청
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위의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그들의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아랍에미리트 양허표

기준가

제11장(정부조달)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에 적용된다.

- 134,000 SDR 모든 상품
- 134,000 SDR 모든 서비스
- 5,844,000 SDR 모든 건설서비스

기관 목록

1	재무부
2	기후변화 및 환경부
3	에너지 및 인프라부
4	청년부
5	경제부
6	인적자원 및 에미라티제이션 (Emiratization) 부
7	법무부
8	산업 및 선진기술부
9	지역사회개발부
10	보건 및 예방부
11	아랍에미리트우주청
12	교육부

13	관용 및 공존부
14	연방평의회업무부
15	국가상담청
16	연방지리정보청
17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행정청
18	정부부통령실
19	에미리트학교연합
20	에미리트국영통신사
21	체육국
22	회교국 관리 및 기부국
23	연방정부인적자원국
24	연방조세청
25	연방주민등록세관항만보안청
26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척결 전략위원회
27	내무부

아랍에미리트 양허표에 대한 주해

제1절의 양허표에 열거되지 않은 연방기관이 디지털조달플랫폼(Digital Procurement Platform)을 활용하는 경우, 그 연방기관은 제1절의 양허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절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한국 양허표

1. 이 장은 이 협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1절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상품 조달에 적용된다.
2. 제 11.4 조(예외)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의한 조달의 경우, 제 11 장(정부조달)은 다음의 군급번호(FSC) 분류품목에만 적용된다.

FSC	참조번호	설명
1	2510	차량의 운전실, 차체 및 프레임 구조 구성품
2	2520	차량 동력전달 장치 구성품
3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수품
4	2590	그 밖의 차량 구성품
5	2610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6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연료계통 구성품
7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전기계통 구성품
8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9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공기 및 기름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10	2990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부수품
11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12	3416	선반
13	3417	절삭기
14	3510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15	4110	냉장장비
16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17	4520	공간 난방장치 및 온수기

18	4940	그 밖의 유지장비 및 수리점용 특수장비
19	5120	날이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않는 수공구
20	5410	사전조립 및 이동식 건축물
21	5530	합판 및 단판
22	5660	울타리재료, 울타리, 문 및 구성품
23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24	5965	헤드세트, 송수화기,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25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26	5995	전선, 코드 및 전선조립품: 통신장비용
27	6505	약품 및 생물제제
28	6220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29	6840	살충소독제
30	6850	각종 특수화학물
31	7310	식품조리, 제빵 및 급식장비
32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33	7330	주방용품 및 용구
34	7350	식탁용 식기
35	7360	음식조리 및 급식용 세트, 키트, 장비 및 모듈
36	7530	문방구 및 기록용지
37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38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39	8110	드럼 및 깡통
40	9150	기름 및 윤활유: 절삭용, 윤활용 및 유압용
41	9310	종이와 판지

아랍에미리트 양허표

이 장은 제5절의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것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제3절

건설서비스를 제외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

한국 양허표

보편적 서비스 목록 중 MTN.GNS/W/120 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음의 서비스는 적용대상이 된다.

GNS/W/120	CPC	설명
1.A.b.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	863	세무 서비스
1.A.d.	8671	건축 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1.A.f.	8673	종합엔지니어링 서비스
1.A.g.	8674	도시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
1.B.	84	컴퓨터 서비스
1.B.a.	84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자문서비스
1.B.b.	842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1.B.c.	843	데이터프로세싱 서비스
1.B.d.	844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1.B.e.	845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1.E.a.	83103	선박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E.b.	83104	항공기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E.c.	83101, 83105*	그 밖의 운송기기(15인승 미만의 승용차로 한정함)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E.d.	83106, 83108, 83109	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83107	건설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F.a.	8711, 8719	광고대행 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1.F.c.	865	경영 컨설팅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1.F.e.	86761*	성분과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 서비스로 한정함)
	86764	기술적 진단 서비스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서비스
	8814*	임업부수서비스(공중 소화 및 병해충 방제는 제외함)
1.F.g.	882*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h.	883*	광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m.	86751, 86752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1.F.n.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장비의 유지 및 보수
1.F.p.	875	사진 서비스
1.F.q.	876	포장 서비스
1.F.r.	88442*	인쇄(스크린 인쇄, 그라비아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1.F.s.	87909*	속기 서비스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1.F.t.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2.C.j.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2.C.l.	7523*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부가가치 팩시밀리 서비스
2.C.m.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2.C.n.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함)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는 제외함)
2.D.e.	-	음반 제작 및 배급 서비스(녹음)
6.A.	9401*	폐수 처리 서비스(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6.B.	9402*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6.D.	9404*, 9405*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건설업서비스는 제외한 서비스)
	9406*, 9409*	환경분야 시험평가 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만 해당함)
9.A	641	호텔 및 그 밖의 숙박 서비스
9.A	642	음식제공 서비스
9.A	6431	오락을 제공하지 않는 음료제공 서비스(CPC 6431의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함)
9.B	7471	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정부 운송요청은 제외함)
11.A.b.	7212*	카보타지는 제외한 국제운송
11.A.d.	8868*	선박의 정비 및 수리
11.F.b.	71233*	카보타지는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 운송
11.H.c	748*	화물운송대행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대리업 서비스 - 해상화물 운송주선 서비스 - 해운중개 서비스 - 항공화물 운송대리업 서비스 - 통관 서비스
11.I.	-	철도 운송을 위한 화물 주선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별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최초 약속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정된 조건부 양허안에 자세히 기재된 대로 “일부분”을 가리킨다.

아랍에미리트 양허표

이 장은 제8장(서비스 무역)에 따라 규정된 아랍에미리트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아랍에미리트 양허표에 대한 주해

서비스에 대한 조달은 제8장(서비스 무역)에 따라 규정된 아랍에미리트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제한 및 조건을 따른다.

제4절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서비스

한국 양허표

제11장(정부조달)은 각 절 및 제5절에 대한 주해를 조건으로 제1절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는 CPC 51에 분류된 모든 건설서비스에 적용된다.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제11장(정부조달)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어떠한 할당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아랍에미리트 양허표

이 장은 제8장(서비스 무역)에 따라 규정된 아랍에미리트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모든 건설서비스에 적용된다.

아랍에미리트 양허표에 대한 주해

건설서비스에 대한 조달은 제8장(서비스 무역)에 따라 규정된 아랍에미리트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제한 및 조건을 따른다.

제5절
일반 주해

한국 양허표

1. 이 협정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항에 대한 조달은 이 협정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이 협정은 건설서비스, 프로젝트 및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제11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모든 할당분 및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랍에미리트 양허표

1. 이 장은 다음 조달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건설서비스, 프로젝트 및 계약
 - 나. 내무부 또는 안보나 군사적 성격의 연방기관이 수행하는 군사적 성격의 모든 구매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 1) 무기
 - 2) 사격 통제 장비
 - 3) 유도탄
 - 4) 항공기

5) 선박

6) 엔진, 터빈, 그리고

7) 통신, 탐지 및 방사능 간섭

다. 모든 의약품 구매, 그리고

라. 2019년 아랍에미리트 내각 결의 제4/8호, 2017년 아랍에미리트 내각 결의 제 1/1호 그리고 그러한 결의를 개정하는 후속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파트너십 프로젝트”로 분류되는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계약

제6절 조달 특혜

한국 양허표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지 않음.

아랍에미리트 양허표

1. 다음과 같은 특정 범주를 위한 법에 의하여 구속력 있는 특권이 있다.

가. 중소기업

중소 프로젝트 및 기업에 관한 2014년 연방법 제2호, 중소기업 프로젝트 및 기업에 관한 2014년 연방법 제2호의 행정규정에 관한 2016년 내각 결의 제35호 및 디지털 조달 정책에 관한 2022년 내각 결의 제1호에 근거하여, 점수를 매길 때 10퍼센트의 추가 보너스가 중소기업의 최종 점수에 가산될 것이다.

나. 국내가치(ICV) 증명서 보유자

국가 부가가치 프로그램에 관한 2021년 내각 결의 제72호 및 디지털 조달 절차 매뉴얼에 근거하여, ICV 증명서가 있는 공급자는 입찰 평가 시 ICV 지침에 따라 25퍼센트의 추가 보너스를 받는다.

다. 제11장(정부조달)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은 국내 녹색 공급자 및 원산지가 국내인 녹색 상품에 대하여 10퍼센트 가격 특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주혜의 목적상,

- 1) **녹색 공급자**란 공동체 안전성, 경제 성장 및 환경 보존 간 발전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국제 우수 관행에 따른 환경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그린 어플리케이션(green application)을 고려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 2) **녹색 상품**이란 공동체 안전성, 경제 성장 및 환경 보존 간 발전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국제 우수 관행에 따른 환경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그

린 어플리케이션(green application)을 보유한 상품을 말한다.

제7절 기준가 조정

1. 각 당사국은 국제통화기금이 월별 “국제금융통계”에 공표하는 환산 비율을 사용하여 제1절에 포함되어 있는 기준가액을 자국 통화로 계산하여 환산한다.
2. 환산 비율은 다음과 같다.
 - 가.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디르함의 기준가가 유효하게 되기 전 해의 10월 1일 또는 11월 1일부터 역산한 2년 동안의 SDR에 대한 디르함의 일일 가치 평균, 그리고
 - 나. 한국의 경우, 한국 원의 기준가가 유효하게 되기 전 해의 10월 1일 또는 11월 1일부터 역산한 2년 동안의 SDR에 대한 한국 원의 일일 가치 평균
3. 당사국은 자국 통화로 된 기준가액을 다음과 같이 버릴 수 있다.
 - 가.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상품 및 서비스는 1백만 디르함 아래, 그리고
 - 나. 한국의 경우, 상품 및 서비스는 일백만원 아래
4. 자국의 통화로 표시된 기준가액은 역년으로 2년 동안 고정된다.
5. 각 당사국은 기준가액의 자국 통화 환산액을 이 협정의 발효 직후에, 그리고 이후에 새롭게 계산된 기준가액을 시기적절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6. 양 당사국은 SDR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주요한 변화가 이 장의 적용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협의한다.

제8절
조달 정보

한국의 공표수단

1. 법과 규정

- 대한민국 정부 관보
- 대한민국 정부 전자관보: <http://gwanbo.moi.go.kr>, 또는
- 한국 법제처 웹사이트: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3. 공급자 등록

<http://www.g2b.go.kr>

아랍에미리트의 공표수단

1. 법과 규정

- 공식 관보: <https://mof.gov.ae/general-revenue-and-expenditure/>

2. 디지털조달플랫폼 정보

- <https://mof.gov.ae/government-procurement-operations/>

3. 공급자 등록:

- <https://mof.gov.ae/supplier-registration-in-federal-supplier-register/>
- 외국 공급자 등록 요건:

서류	외국 공급자	유효 기간(일)	만료 전 경고(일)
세금등록증명서	해당됨	365	30

수익 소유자의 여권 사본	해당됨	365	30
계약 성립 (파트너십의 경우)	적용 가능한 경우	365	30